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19. 5. 14.(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19. 5. 1.
- 회부일 : 2019. 5. 3. (의안번호 : 19 - 45)

2. 개정이유

- 방재활동 중 발생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피해(부상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
따른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방재단 운영비, 활동 물품, 방재장비의 구입 및 임차 등 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지원근거 보완(안 제9조제8항)
- 방재 활동 중 발생한 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 규정 신설 (안 제17조)
 - 재해보상금의 청구 방법 등
 -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 등
 - 재해보상금의 유족 순위 및 재해보상금의 환수 등

4.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 및 제3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5.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방재활동 중 발생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피해(부상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9조제8항에 방재단 운영비, 활동 물품, 방재장비의 구입 및 임차 등 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지원근거 보완함.
- 안 제17조에 방재활동 중 발생한 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해보상금의 청구 방법 등, 재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 등, 재해보상금의 유족 순위 및 재해보상금의 환수 등을 규정함.

- 검토의견으로는

자율방재단 필수경비 개정(제9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필수경비를 구체화한 것임.

- 또한, 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신설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으로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절차 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